

# 보건복지 소식 광장



##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3년 6~7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s.jsp?PAR\\_MENU\\_ID=048&MENU\\_ID=0403](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 I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 구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

- 지난 5월 25일(목)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2일(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였다.

-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7월 12일(수)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토)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 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1 부양가족연금 개요

- (목적)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미성년 또는 장애있는), 부모(고령 또는 장애있는)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 ■ (부양가족 범위 및 연금액)

대상자	연령·장애요건	연금액 (2023년)
배우자	-	연 283,380원 (월 23,610원)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연 188,870원 (월 15,730원)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연 188,870원 (월 15,730원)

\*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모두 지급

#### ■ (적용대상 급여)

적용 대상	적용 비대상
노령연금(부분연기연금 포함) 장애연금(장애등급 1~3급) 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연계노령유족연금(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장애연금 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참고 2 유족연금 개요**

■ (목적) 가입자(였던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 (유족의 범위)

순위	대상자	연령·장애요건
1	배우자	-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3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5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 (연금액)

가입기간	유족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중복급여 조정)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다른 연금을 선택하면, 선택한 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하여 지급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626. 국민연금정책과. 2023. 06. 11.

## II

### 섬, 농어촌 지역으로 지역사회서비스가 찾아갑니다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실시 -
- 2023년 7월부터 7개 시·군·구에서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서비스 수요는 있으나, 공급 기반(인프라)이 취약한 지역에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이하 ‘취약지 지원사업’)」을 2023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없거나, 공급 기반(인프라)이 취약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농어촌, 도서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인근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거점 제공기관이 취약지역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돌봄, 심리 지원, 건강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별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을 통해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그간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이 활성화되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출장비 등 원거리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서비스 제공지역이 아닌 인근 시군구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점기관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해 제공기관이 등록된 소재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7개의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각 시·군·구는 사업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전남 고흥군, 진도군, 신안군의 경우, 지역 내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재활 레크리에이션, 노후 여가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 울진군은 지역 특성상 넓은 면적과 산악지형으로 인해 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정신질환자 대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충남 부여군은 주변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을 활용해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정부는 사회 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에 따라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지역별 서비스 주요내용 및 사업계획

사업수행지역		제공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사업 계획
시도	시군구			
경북	울진군	청년마음 건강지원	-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내용) 사전, 사후 검사를 포함, 3개월간 10회의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울진군 소재 제공기관에서 공공기관 등에 출장 방문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충남	부여군	정신건강 토탈케어	- (대상)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 - (내용) 정신질환의 증상·기능수준·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증상 관리, 일상 생활 지원, 사회적응 지원 등)을 월 4회 제공	논산시 소재 제공기관에서 출장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 제공
	공주시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 (대상) 만 18세 이하 주의력결핍 등 아동·청소년	지역 내 제공기관 지원으로 전문인력 확대를 통해 서비스 활성화
	서천군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 (내용) 언어, 놀이 심리 프로그램 등 월 4회 제공	
전남	고흥군	판소리 건강 100세 추임새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 (내용) 판소리 및 민요 교육, 월 8회 제공	여수시 소재 제공기관에서 경로당, 마을 회관 등에 출장 방문하여 교육 서비스 제공
	진도군	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 (내용) 통합형(재활, 인지기능, 웃음코칭) 프로그램, 주 1회 제공	신안군 소재 제공기관에서 경로당, 마을 회관 등에 출장 방문하여 재활 프로그램 등 제공
	신안군	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677. 사회서비스사업과, 2023. 06. 27.

### Ⅲ

####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한다

-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국회 통과 -
- 202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예정 -
- 아동 입양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0일(금)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에서 제명 변경)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 입양절차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내입양 특별법 주요내용〉

-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 ① 시·군·구의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인 경우에만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되고, 입양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해당 아동을 입양 전까지 보호하게 된다.
- ② 예비양부모 상담 및 교육, 적격성 심사를 위한 조사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해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게 된다.
- ③ 입양대상아동과 예비양부모간의 결연(matching)은 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 ④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결연 후 예비양부모의 입양허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 ⑤ 입양 성립 후 최소 1년간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사후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전문 위탁기관에서 정기적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또는 연계한다.

- ⑥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관 중인 25만여 건의 기록물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고,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체계적 기록관리, 투명한 정보공개로 입양인의 알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⑦ 보건복지부는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매년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에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입양 실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 〈국제입양법 주요내용〉

- 보호대상아동의 국제입양 뿐만 아니라,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 등 모든 아동의 국제입양을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헤이그협약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①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이하 출신국)에서는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아동을 입양 받는 국가(이하 입양국)에서는 양부모의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상호 보증하고, 최종적으로 출신국의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 ② 국제입양은 헤이그협약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제입양대상 아동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국제입양에 따른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③ 국제입양 성립 후에는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하여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적취득 여부 등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 이번에 통과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될 것으로,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일에 맞추어 2025년 헤이그협약이 비준될 예정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2년 후 새로운 입양체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704. 아동복지정책과. 2023. 06. 30.



## IV

###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 제2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7.7) -
-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7월 7일 금요일 15시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서비스 -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었다.

\*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kcpass>

■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은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공론의 장으로,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 제1차(5.4.):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제고 방안

\*\* 2023년 총 5회 개최 예정(제3차 8월, 제4차 9월, 제5차 11월)

■ 먼저 1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의 진행으로 강남대학교 한동우 교수가 ‘사회공헌 현황과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민, 관의 역할’을 주제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확대되어 온 기업사회공헌 현황을 짚어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 기업-정부-민간의 사회공헌 정보 소통 플랫폼 구축, 기업사회공헌 인증과 인센티브 부여 및 규제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경희 사회공헌본부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우용호 사회공헌센터소장, 대한상공회의소 김현민 공급자ESG지원센터장,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가 참여하여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회서비스와 기업 사회공헌을 연결하기 위한 민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 2부에서는 ‘기업에게 듣는 사회서비스’라는 주제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과 임팩트스퀘어 도현명 대표의 공동 진행을 통해 국내·외 기업 사회공헌 사례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 국내·외 기업 사회공헌 사례는 비랩코리아 서진석 이사, 현대차 정몽구 재단 최재호 사무총장,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황애경 이사가 참여하여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과 협력을 통한 사회가치 창출 사례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강남대학교 한동우 교수가 1부 발제에 이어 2부 토론자로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갔다.
-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인구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 주거·돌봄·의료 등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라면서 “오늘 논의된 우수사례와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라고 밝혔다.
-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그동안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이 이루어져 왔다. 이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통의 목적을 가진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을 연결할 때” 라며, “민관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228. 사회서비스정책과. 2023. 07. 07.